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685호

시행일자 2019. 3. 22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(집행정지 안내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(보건복지부 2019-32호)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959호(2019. 3. 21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9.2.21. 개정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2호) [별표1] 별지3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불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되어, 집행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약사명	집행정지 품목	효력정지일
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	마이폴텍장용정 2품목 (불임 참조)	2019. 3. 21.일부터 서울고등법원 2019누36423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

붙임: 집행정지 대상 품목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